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8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진종오·곽규택·김기웅

이종배 · 서명옥 · 박상웅

정성국 · 김태호 · 박충권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인파가 밀집된 시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정기·수시 적성검사가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 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와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이 그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통보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즉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기· 수시 적성검사 시 모의도로주행 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도록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각 분야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 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0세"를 "65세"로 한다.

이 경우 정기 적성검사에는 모의 도로주행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시 적성검사에는 모의 도로주행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9조제1항 중 "경찰청장에게"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중 "조치"를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 여부와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위하여 각 분야 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판정 기준·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
기 적성검사) ① (생 략)	기 적성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정기 적</u>
	성검사에는 모의 도로주행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어야
	<u>한다.</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u>70</u>	<u>65</u>
<u>세</u> 이상인 사람	<u>세</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	
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	
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	

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 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 단 신설>

② (생략)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 7 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 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생략)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7 사람에 대한 <u>조치</u>) (생 략)

<신 설>

~~~ 우 수시 적성검사에는 모의 도
로주행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u>.</u>
① (현행과 같음)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
정보의 통보) ①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u>경찰청장에게</u>
<u> </u>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
성 여부와 제82조제1항제2호
0 11-1 1100-1116/11/25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u>둔다.</u>
<u> &lt;신 설&gt;</u>	③ 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판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